

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

(현옥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-52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8. 13.

발의자 : 현옥순, 김재국, 설호영
이대구, 박은정, 이지화
이혜경, 김유숙, 박은경
유재수, 최진호, 황은화
이진분, 최찬규 의원(14인)

1. 제안이유

-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시장 및 거리공연가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안 제4조)
-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- 거리공연 장소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안 제7조)
- 거리공연 준수사항(안 제8조)
-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(안 제9조)
- 거리공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3. 제정조례안 : 붙임 1

4.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 2

5. 예산수반사항 : 붙임 3

- 비용추계서 첨부

6. 부서검토의견 : 붙임 4

【붙임 1】 제정조례안

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거리공연” 이란 도로, 광장, 공원,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, 춤, 마술, 미술, 전시, 행위예술,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.
- “거리공연가”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거리공연가의 책무)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,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
-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
- 거리공연가의 육성·창작 지원
-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
-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거리공연 장소 운영)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사업 등) ①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거리공연가의 활동·육성 및 창작에 대한 지원
2.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
3. 거리공연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
4.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

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거리공연 준수사항)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·사용, 소음 발생,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불편, 환경훼손, 불법 상행위 등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준수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
2.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에 따라 소음피해를 받는 시민들을 고려한 거리공연의 시간제한 및 공연 제한 등 준수사항
3. 거리공연 장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
4. 그 밖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0조(사무의 위탁) 시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거리공연 운영에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1조(포상)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「안산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속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현옥순 의원 대표발의 (행정 3573)

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9-520
--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년 9월 2일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일부 조문을 이동함.

□ 주요골자

- (안 제10조) 사무의 위탁 조문을 삭제함.
- (안 제11조) 안 제10조의 삭제에 따라 안 제11조를 제10조로 함.

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를 삭제하고, 안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<u>제10조(사무의 위탁) 시장은 거리공연</u> <u>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</u> <u>제7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거리공</u> <u>연 운영에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</u> <u>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
<p><u>제11조 (생 략)</u></p>	<p><u>제10조 (현행 제11조와 같음)</u></p>